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전 3급) 장애인 포함〉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497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9. 2.

(3) 회 부 일 : 2024. 9.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중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종전의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3급 중복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뜻하므로 종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의 개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전 3급)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 ----- <u>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u> -----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과 같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약 50만 명인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약 89만 명으로 증가하며, 이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전체 장애인 중 30%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8월 말)
현행(A)	518,705	515,498	508,975	502,008
(전체 장애인대비 비율)	(19.6)	(19.5)	(19.3)	(19.1)
개정안(B)	918,341	913,756	904,029	892,421
(전체 장애인대비 비율)	(34.7)	(34.5)	(34.2)	(33.9)
개정안에 따른 증가(B-A)	399,636	398,258	395,054	390,413

주1): 현행(A)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 개정안(B)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8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임.

주2): 위 통계는 수급권자이며, 실제 장애인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수급권자의 약 70%로 추정됨(소득하위 70%).

자료: 보건복지부, 재구성

□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표현을 전제로 조문화하고 있음.

- 그 결과 법문 자체에서 수급권자를 ‘장애의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써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중복된 표현을 사용함.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장애인복지법」 하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구체화됨.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에게 지급되며(참고자료 1: 2024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따로 정하고 있음(참고자료 2: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전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 위의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중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거나,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으로, 이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급 ~ 6급 장애등급 중 1급이나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중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을 의미함.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이하생략.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1. 적용 원칙

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 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나.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다. ‘가’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중전 3급 중복장애 : 중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개정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나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월 6만원, 보장시설 거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원을 받음.¹⁾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가 확대되면, 1조 418억 원(국비 기준 6,980억 원, 국비 지원 비율은 서울 50%, 지방 70%)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조 4,724억원(연 평균 1조 945억원)의 재정 투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추계한 바, 이와 관련한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실제 소득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2022년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개별 장애인의 소득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조사도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장애계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제도 개편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음.
- 올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소득·지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계가 수용 가능한 지급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재정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계속할 계획임.
- 이러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현재 시점에서 법령을 우선 개정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함.

나. 기획재정부(신중검토)

-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 수급자 확대는 장애 정도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 상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복지부가 연말까지 중증 장애인 소득 및 지출실태 조사를 진행중으로 관련 결과를 보고 추후 종합 검토 필요
-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제도 개편은 장애인 일자

리, 장애수당 등 전체적인 제도와 연계하여 신중검토 필요

* 국비 약 6,980억원 추가 소요 예상(지방비 포함 시 약 1조원)

- 2023년 장애수당 50% 인상(재가 4→6, 시설 2→3만원), 최근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21: 2.5→ '25: 3.4만개)한 점 등 고려 필요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2024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단위: 원)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24,810원 ^{주2)}	424,81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334,810원		- ^{주3)}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80,000원	414,810원		80,000원 ^{주4)}	80,000원
차상위 초과		30,000원	364,810원		50,000원	50,000원

주1):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주2):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주3): 단,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는 특례가 적용되어 80,000원 지급

주4): 단,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 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는 특례가 적용되어 150,000원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전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1. 적용 원칙

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 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나.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다. '가'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절단장애

(가) 상지절단장애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하지절단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가) 상지관절장애

①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③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④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나) 하지관절장애

①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지체기능장애

(가) 상지기능장애

①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②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나) 하지기능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4) 척추장애

①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나. 뇌병변장애

①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⑤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⑥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3점 이하인 사람

다. 시각장애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4 이하인 사람

라. 청각장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바. 정신장애

- ①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④ 조현정동장애로 ①호 내지 ③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사. 자폐성장애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아.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제2장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라-(3)항의 (가)~(사)항의 검사결과와 임상소견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인 사람

차. 호흡기장애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카. 간장애

-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간성뇌증 2회 이상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간신증후군
 -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간신증후군의 병력
 -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타. 안면장애

- ①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②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파. 장루·요루장애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폐색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폐색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 뇌전증장애

1)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①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다만, 결신발작은 제외하고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만 포함)

②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③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④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